



환 경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대상 품목 산업계 간담회 참석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하여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가죽용 경화제와 경화촉진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 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안을 설명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2.2.22.(화) 14:00~16:00

나. 회의방법 : 영상회의(참석방법 별첨)

다. 참석대상 :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신규 관리대상 품목(가죽용 경화제, 경화촉진제)
제조·수입자

라. 주요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 및 안전·표시기준 세부사항 설명,
가죽용 경화제 및 경화촉진제 안전·표시기준(안) 등 산업계 의견 수렴 등

붙임 : 참석방법(별첨) 1부. 끝.

환 경 부 장 관



수신자 신규 관리대상 품목(가죽용 경화제, 경화촉진제) 제조수입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주무관 신종환 서기관 한미옥 과장 전결 2022. 2. 14.
신건일

협조자

시행 화학제품관리과-213 (2022. 2. 14.) 접수

우 30103 세종 도움6로, 7층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6826 팩스번호 044-201-6786 / asowner2@korea.kr / 대국민 공개